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6. 1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6. 1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1999. 3. 3 대통령령 제16168호)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유발량이 적은 APT단지 내 상가(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무인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처리장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안 제3조)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감면을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률 확대(안 제6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경감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시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률 적용(안 제5조제4항)
- 교통량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 구분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각각의 경감비율의 합산으로 적용(안 제6조제3항)
-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별 탄력성 있게 경감률 적용시 반영(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은? ○ 개정된 조례를 적용시 경감금액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행정의 주체는 어디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억원 정도임 ○ 약 2억원 정도임 ○ 감축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임 ○ 현재는 구청 지역경제과이지만 향후 지역경제과가 폐지되면 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할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호
의결년월일	2000. 7. 6 (제79회)

제출년월일 : 2000. 6. 1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1999. 3. 3 대통령령 제16168호)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통유발량이 적은 APT단지 내 상가(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무인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처리장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안 제3조)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감면을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률 확대(안 제6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경감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시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률 적용(안 제5조제4항)
- 교통량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 구분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각각의 경감비율의 합산으로 적용(안 제6조제3항)
-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별 탄력성 있게 경감률 적용시 반영(안 제10조)

□ 첨 부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5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 ②“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

33조제6항에서 규정한 연결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 요금의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감면) 영 제34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영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자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2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③영 제38조제4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입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통근관리인 선임 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 중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타기 :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부담금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에 승용차 진·출입금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 다만, 5·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모두에게 부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주차장요금의 100분의 70 이상 징수 ※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p>승용차함께타기</p>	<p>○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p>	<p>○ 전체소속직원 소유 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 - 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5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10</p>
<p>시차출근제</p>	<p>○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 (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p>	<p>○ 1시간 차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p>
<p>통근버스운영</p>	<p>○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수단 제공</p>	<p>○ 출·퇴근 운영시 : $\{(\text{총좌석수} \div \text{총종사자수}) \div 2\} \times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text{총좌석수} \div \text{총종사자수}) \div 4\} \times 100$의 비율(경감률 최대 30% 이내)</p>
<p>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p>	<p>○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승차권 등 제공</p>	<p>○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p>

[별표2]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 승용차 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 여 한 기 업 체
<p>○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1%</p>	<p>○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1%</p>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5%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p>○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 	<p>○ 시설물의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5%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설 개요	명칭		면적(m ²)	
	주소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종사자)

경 감 결 정 사 항	구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경감비율(총계)	%	%
	승용차 10부제	%	%
	승용차 5부제	%	%
	승용차 2부제	%	%
	주차장 유료화	%	%
	승용차 함께타기	%	%
	시차출근제	%	%
	통근버스운영	%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직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미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이행 프로그램	미이행 내용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년 월 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기업체 대표 ○○○ 귀하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1996. 7. 18] 조례 제1421호

개정 1997. 1. 9 조례 제1469호

1997. 5. 20 조례 제1515호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의무감축방안”이라 함은 부담금 납부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의 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주차요금은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주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 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사자에 대하여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승용차 함께타기를 전담하는 동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 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20 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통근버스의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

자전거 보관시설을 부설주차면수의 2배 이상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10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8:00 전과 09:00 후에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6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 중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연1회 이상 관할구역 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무 및 추가감축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 시행일자 적용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행실태보고서 제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실태보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천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①시장은 경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천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덕망있는 민간인을 30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시 공무원 중에서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위원회는 부담금경감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심의 및 경감률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부천시 ○○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위원회) ①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2조(미이행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미이행사항이 적발될 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 7. 18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20 조례 제151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총 대 지하주차장 입체주차장	대 대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결 정 사 항	구 분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비 고	
	경 감 륜		%	%		
	의 무 감 축 방 안		%	%		
	추 가 감축방안	소 계		%	%	
		통근 버스 운영		%	%	
		승용차 5부제		%	%	
		승용차 2부제		%	%	
		자전거 보관시설		%	%	
출근 시차제		%	%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비율을 확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기업체 대표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미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구 분	기업체 이행계획서	미이행 프로그램	미이행 내용
의무 프로그램			
추가 프로그램			

년 월 일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기업체 대표 ○○○ 귀하